

#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## 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2년 8월 12일(금) ~ 8월 18일(목) 17시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)
제출방법	방문 예약 신청 후 견본주택 방문접수
견본주택 위치	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2번지 (대표번호 : ☎ 061-282-8004)
유의사항	-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※ 상기 제출증명서류는 최초 **입주자 모집공고일[2022.07.22(금)]**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## 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기준	주요 확인 사항
	필수	해당			
공통	○		서약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- 본인발급용에 한함, □ <b>본인서명사실확인서</b> 대체 가능 (용도: 주택공급신청용)
	○		인감도장	본인	- 인감증명서 상 도장 대조, <b>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</b>
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- 주민등록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, 운전면허증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- 연속 90일 초과 / 연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- <b>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</b>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본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-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지역 청약 시 복무기간 확인
		○	국방부 추천명단	본인	-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해당지역 청약 시 추천명단 확인
		○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- 순위, 가입기간, 예치금 확인 / 인터넷 청약 시 생략
해외체류 단신부임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(단신부임)	본인	- 국내기업 소속(건강보험, 재직증명서, 출장명령서)/해외기업 소속(현지 발급서류, 번역공증 등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단신부임)	세대원	- 등분상 세대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
	○		여권, 비자 발급내역 등	세대원	- 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 세대원 해외체류 시 동일 국가 체류여부 추가 확인
노부모 부양	○		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	-	- 견본주택 비치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산정하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-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확인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- 직계존속 배우자 확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가족 포함 시 관계 확인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직계존속)		- 과거 3년 이내 90일 초과 해외체류 확인(본인생년월일~모집공고일)
	○		혼인관계증명서		-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직계비속)	자녀	-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본인생년월일~모집공고일)
	○		주민등록표초본		-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이상 부양 확인
	○		혼인관계증명서		- 만 18세 이상 자녀 미혼여부 확인
○		가족관계증명서	- 재혼배우자 전혼자녀 부양가족 산정 시(신청자 본인 등본 등재 한함)		
대리인 추가서류	○		위임장	본인	- 견본주택 비치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)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- 본인발급용 확인(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※ <b>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</b>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- 대리인 본인 확인
	○		대리인 도장	대리인	- 서명가능
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		해당자	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	해당자	-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		해당자	- 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, 등기사항전부증명서)
				해당자	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았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및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